힘찬변화, 자랑스러운 강동

강동구자원순환센터
약 품 구매사양서

강동구

환경에너지솔루션
ENVIRONMENT & ENERGY SOLUTION

구매 사양서

1. 목적

본 사양서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시설을 안정적 약품 수급을 위한 품질 조건 및 관리 방법 등을 명시하여 구매하기 위함.

2.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약품을 구입함에 있어 과업요령과 점검 및 확인사항 등 업무전반에 관한 세부 수행지침으로 적용되며, 본 구매 관련 계약 문서 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계 규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

3. 물품구매 개요 및 세부 사양

가. 일반사항

(1) 본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시, “계약자”는 현장 적용을 위한 실험 및 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상기 결과를 참조하여 현재 사용 중인 물품과 동등 이상의 효율을 나타내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상기 효율을 나타내는 제품을 제시(납품)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는 제품을 지정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본 시설의 운영 상황에 따라 공급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예정 물량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계약자”의 귀책사유(각종 사고, 노사분규 등)로 인하여 적기에 약품 운송을 못하여 “발주처”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발생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되 소요 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6) “계약자”는 본 구매 사양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인적·물적 피해 외에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상기 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나. 목적 물품

연번	품 명	규 격	예상사용량	회당 납품조건
1	가성소다	25%	50,000kg	1~25톤 전용 탱크로리
2	차염소산나트륨	12%	104,000kg	1~10톤 전용 탱크로리
3	황산	70%	24,000kg	1~10톤 전용 탱크로리
4	복합유기탄소원	SFCS-36001 동등 이상	480,000kg	1~16톤 전용 탱크로리/1톤 IBC 용기
5	PACL	17%	73,000kg	1~10톤 전용 탱크로리/ 1톤 IBC 용기
6	철염	38%	20,000kg	1~5톤 전용 탱크로리/ 1톤 IBC 용기
7	폴리머	액상형	100,000kg	1~5톤 전용 탱크로리/ 1톤 IBC 용기
8	소포제	소포제(알콜계)	4,000kg	20kg 말통/1톤 IBC 용기
9	복합청관제	CB-110	6,400kg	20kg 말통/1톤 IBC 용기
10	정제염	정제염	2,400kg	20kg 포대

다. 세부 사항

(1) 복합유기탄소원의 탈질 성능 시험에서 SFCS-36001 동등 이상의 성능이 현장 테스트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2) 복합유기탄소원은 팽화처리제(4710169901) 및 슬러지저감제(4710161601)로 등록된 제품이어야 한다.

(3) 복합유기탄소원은 1톤 IBC 용기 12개 및 부속 배관을 무상 대여 한다.

(4) 폴리머는 1회/월 이상 및 요청시 Jar-TEST 실시하여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폴리머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효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효율 유지에 필요한 테스트 비용은 "계약자" 가 부담 한다.

(6) 복합청관제는 안정적인 시설 투입을 위한 IBC 용기 및 부속 배관을 무상 대여 한다.

4. 계약자의 책무

가. 비상시 주말 및 공휴일도 납품하여야 한다.

5. 물품검수

가. "발주자" 입회하에 발주기관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하여야 한다. 단, 해당 시설 이용이 불가할 때는 공인 계량증명소 또는 "발주자" 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계량할 수 있다.

나. "발주자" 요청시 "계약자" 는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자" 가 부담한다.

다 . 계량 및 검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의 부담으로 한다.

6. 품질

가. “계약자”는 최초 납품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한 물품이 사양에 만족하는 것임을 보증하여야 하며, 매 물품 입고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약품으로 인하여 관련 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명백하게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별도로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품질, 규격미달 물품으로 인한 운영손실 발생시 다음 7항에 기술된 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된 일체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 품질이 저하된 약품 입고로 공정상 및 환경적 문제 발생 시 귀책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7.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

가. 물품의 품질분석결과 규격이 미달할 경우 “계약자”는 즉시 품질이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여 납품 절차에 따라 재납품하여야 한다.

나. 규격미달 물품 발생으로 납기가 지연되어 “발주자”의 설비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시 “발주자”는 “계약자”외의 타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시 “발주자”는 추가비용에 대해 “계약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회의 납품 지연이나 규격 미달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계약 불이행 횟수	1회	2회	3회 이상
조치 내용	주의	경고	계약 해지

8. 안전관리

가. 물품의 납품ㆍ입고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되며, “계약자”의 귀책으로 인한 주변 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원인자에게 귀속한다.

나. 물품의 납품ㆍ입고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손상 초래시 “계약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물품의 납품ㆍ입고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에게 귀속한다.

9. 기타사항

가. 대금의 청구는 당월 납품 완료 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당월 말일까지 사업소에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 는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나. **“계약자”** 는 계약 이행시 소요되는 비용(계량비, 운반비, 시험분석비 등)을 일체 부담하며 이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 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발주자”** 의 허락 없이 일절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사유로 발생된 책임은 원인자가 진다.

마. **“계약자”** 또는 고용인의 약품 납품과 관련된 행위(시료채취 입회 행위 등)는 **“계약자”** 가 행한 것으로 본다.

특수 조건

본 계약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 수탁자인 환경에너지솔루션(주)를 “갑”으로 하고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에 운영 약품을 납품•입고하는 계약자를 “을”로 하여 계약의 특수조건을 설정한다.

제1조 (목 적)

“갑”의 사업장에 필요한 운영 약품 납품•입고에 대해 “을”로 하여금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이다.

제2조 (범 위)

본 계약 범위는 계약자가 계약기간에 수탁자가 물품 발주에서부터 사업장에 납품•입고시까지의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수 행)

① “을”은 “갑”과의 계약에 명시된 물품을 “갑”의 사업장에 안전하게 납품•입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내에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③ “을”은 “갑”의 물품 입고에 대한 추가 요구가 있을시 즉시 조치한다.

제4조 (시험성적서 제출)

“을”은 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 (검 수)

① 감독자는 계약자의 시험성적서를 접수받아 최종 납품 수행여부를 판단한다.

제6조 (지체상금)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주기에 의한 납품•입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해당 물품 수량에 계약금액으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물품 지급대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7조 (상호협조)

“을”은 납품•입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갑” 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이 경우 “갑”은 “을”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계약체결 후 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을” 이 아무런 사유 없이 “갑” 의 납품•입고 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 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제9조 (안전 및 시설물)

“을” 은 물품공급 계약을 수행하면서 납품인원에 대한 안전조치 및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괴가 있을 경우는 원상복구 조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 에게 있다.

제10조 (비밀보장)

“을” 은 본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갑” 의 허락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 (기 타)

위탁 납품•입고에 필요한 운송 및 상、하차 등은 “을” 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행정사항)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 할 때에는 “갑”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 (해 석)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른다.